

「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04 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1(목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)

- 가.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강설에 의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"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" 제정을 추진함
- 나. 주요골자
 - 건축물관리자의 재설·제빙 책임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·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
 -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 -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
 - 제설·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
 -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,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
 - 제설·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(안 제6조)
 -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내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,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함
 - 도로여건, 지역특성 등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·제빙작업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함

- 제설·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(안 제7조)
 -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
- 제설·제빙작업의 도구 비치·관리(안 제8조)
 -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·제빙작업 도구 비치·관리토록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·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,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제설책임을 부과하고, 작업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하며
- 제설방법 및 작업도구 비치·비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위 조례안은 2006년 제13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안건으로 안 제6조의 “제설·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완료해야 함을,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을 24시간 이상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.”라고 수정되어 제출되었음.

다. 본 조례안은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민의식의 발로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제설이 이

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으로 의미있다고 판단되나, 제설·제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.

○ 기타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